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 년 9 월 19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
(영문명) Must Investment Advisory inc.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 길 89 (도곡동, 삼성엔지니어링 12 층)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김두용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부대표이사
(성 명) 구은미 (전 화) 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기획팀 팀장
(성 명) 박상은 (전 화) 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

1. 발행회사	회사명(국적)	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	대표이사	김두용
	자본금(원)	34,183,150,000	회사와 관계	기타
	발행주식총수(주)	36,183,150	주요사업	부동산투자
2. 처분내역	처분주식수(주)	1,113,682 주		
	처분금액(원)	1,738,088,770		
	자기자본(원)	6,679,391,053		
	자기자본대비(%)	26.02%		
	대규모법인여부	부		
3.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	소유주식수(주)	11,001 주		
	지분비율(%)	0.03%		
4. 처분목적	단순투자			
5. 처분예정일자	2016.09.19			
6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-			
- 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-		
	불참(명)	-		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-			
7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-			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		

〈기재상의 주의〉

주 1) 자기자본의 100 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2.5) [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(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 천억원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 분의 5)]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[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(당해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)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(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)를 통한 처분을 포함]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처분(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처분을 포함)의 경우는 제외한다.

※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 년간에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의 누계금액을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에 기재한다.

주 2) “회사와 관계”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을 기재한다.

주 3) “처분금액”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처분가액을 기재한다.

주 4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 조원이상,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 천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

주 5) 자본잠식법인은 “자기자본”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.

주 6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지분처분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 7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 또는 100 억원이상)”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

주 8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